

# 차관계약(농업기차채도입)채결에 대한동의(안)

의안 번호	53
----------	----

제안년월일 1971. 9.

제안자 성 부

## 1. 제안이유

1970년 7월 제4차 헌일정기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대일신차차관 5천만불을 농업개발, 수출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사용키로 양국간에 합의하였으며 이중 농업개발을 위한 20백만불중 15백만불은 원차채를 도입, 그 환매대권을 농업개발에 사용키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1970. 12. 22. 제75회 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기결 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잔여 5백만불은 농업개발을 위한 기차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헌법 제54조의 거정에

의지 차관계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별첨외 같이 요청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 채무 예정액 : 7,570 천만원

별지:

차관계약(농업기차제도)제설에 대한동의(안)

단위: 천만원

사    업    명	차관에산대	이차구결액	차부제결액
농업기차제도입	5,000	2,422	2,422
오차대백			118
계			2,540

< 부    대    조    치    >

차관이 판매된 후 차관품의 가격의 차과관계 및 구 및 환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조치가 취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공백

참 고 자 료

~~2020~~

공백

# 농업기자재도입

가. 차 주 : 정부 (농협)

나. 차 관 선 : 일본 수출입은행

다. 차 관 액 : 5,000 천마불

라. 사업내용

(1) 낙농사업을 위한 유처리와 원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 필요한 착유기, 냉각기, 밀크펌프, 수송차 도입

(2) 도축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도축장시설 도입

(3) 농업기계화를 위한 고성능 분무기 도입

마. 차관조건

이 자 율 : 년 6.25%

거 치 : 3년

상 환 : 10년

바. 예상채무액 : 7,570 천만원  
원금 : 5,000 "  
이자 : 2,422 "  
오차대비 : 148 "

사. 사업의 필요성

(1) 낙후된 낙농업의 근대화 및 유통과정의 개선 등  
도모하기

(2) 농업기계화를 위한 기자재를 도입하여 농업투  
자의 발전을 기함

나. 기 타

제4차 한국농정개발위원회의에의 정당한 선거차관  
5천만원은



(1) 농수산업부문	20,000천원
농업용기개선투입	5,000
원자재 도입	15,000
(2) 수출시설	15,000
(3) 중소기업	15,000

에 사용토록 일촉과 합의하였으며 그 중 원자재  
 도입을 위한 15,000천원 차관계약에 대해서는  
 기하 1970. 12. 22 제 15 차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았음.

~~1970. 12. 22~~

공백